

수신 **서울시 특수판매(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)업체**  
(경유)

제목 **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명령 및 사회적거리두기(2단계 발령) 협조 요청**

1.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체에 감사드립니다.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재 수도권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속해서 세자릿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8월 19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.  
※ 수도권 확진자 수 : (8.15) 145 → (8.16) 245명 → (8.17) 163명 → (8.18) 201명
3. 이에 서울시에서는 중대본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등록업체에서는 소속판매원 및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집합금지명령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※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시 「감염병예방법」 제80조 제7호에 의거 고발조치(벌금 300만원 이하),  
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4. 각 업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모임과 행사금지 및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서울시는 특수판매업 고위험 집합시설(홍보관 등)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이행 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 
2.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1부  
3.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1부. 끝.



서울특별시



★주무관 김세현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8/19 박주선

협조자

시행 공정경제담당관-18034 ( 2020.8.19. ) 접수 ( )  
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/  
전화 02)2133-5371 /전송 02)768-8852 / sehyun97@seoul.go.kr / 부분공개(7)

#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

## 1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## 2 적용 대상

- (대상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

\*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

-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방

## 3 적용 기간

- 2020년 8월 19일(수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
- 다만, PC방,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8.19. 18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

## 4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

\*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‘홍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’

## 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 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 
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(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## ○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☞ 감염병예방법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

-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

## 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
- 해당 시설에 대해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 이하)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# 서울특별시

# 참고1

##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(8.19~)

※ 음영 표시는 8.19일 0시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

구분		조치사항(수도권)
집합·모임·행사		○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
스포츠 행사		○ 무관중 경기 전환
다중이용시설	공공	○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
	민간	○ 고위험시설 12종*(유통물류센터 제외) 운영 중단 *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방 **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
		○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, 영화관,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(12종*) 방역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 * 학원, 오락실,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(예: 150㎡ 이상)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실내 결혼식장, 공연장, 영화관, 목욕탕·사우나, 실내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 **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
학교		○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·휴원 권고 *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○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·군·구 원격수업 전환 ○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/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*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/3 수준
기관·기업	공공	○ 유연·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(예 : 전 인원의 1/2)
	민간	○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

## [국민 행동 지침]

-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, 근육통 등) 등 몸이 아프면  
외출·출근·등교하지 않기
- ② 의료기관 방문, 생필품 구매, 출퇴근 외에,  
불요불급한 외출·모임·외식·행사·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
- (식사) 음식점·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·배달
  - \*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,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·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
  - (운동)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
  - (친구·동료모임)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 
(PC, 휴대폰 활용)
  - (쇼핑)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
- ③ 외출 시,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 
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·밀집·밀접(3밀) 된 곳 가지 않기
- (마스크 착용)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,  
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
  - \*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(음식 섭취, 노래 부르기, 응원하기 등)는 자제
  - (거리 두기) 사람 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  - 침방울이 튀는 행위(소리 지르기,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, 응원하기 등),  
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하지 않기

## 붙임 5

##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 [의무사항]

구분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	비고
<p>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 보관 (방문판매업, 다단계판매 업, 후원방문 판매업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입자 명부 관리 (4주 보관 후 폐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</li> <li>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/ul> </li> <li>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</li> <li>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</li> <li>■ 1일 1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 작성)</li> <li>■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■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</li> <li>■ 출입구 및 시설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</li> <li>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li>■ 공연, 노래부르기, 음식제공 등 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■ 마스크 착용</li> <li>■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/ul>	